

2006. 7. .

條例案件審查報告書

-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産業建設委員會

조례안건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2006. 7. 5	2006. 7. 7	2006. 7. 13	2006. 7. 13	교통과장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	"	"	"	하수시설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공동주택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

나.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일 하수처리량의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충주시 공공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민간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 경영의 효율성,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 공동주택단지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안 제3조 내지 제5조)
-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안 제25조 내지 제27조)
-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사항 규정

나.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 하수도사업범위를 공공하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기타 유사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으로 함 (안제2조)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하수도특별회계로 통합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며, 세입·세출경비내용을 정함 (안 제8조)

-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사업경비의 범위를 정함(안 제10조)
- 지방채 발행의 근거와 방법을 정함 (안 제13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 본 조례의 제정은 주택법 52조의 규정 및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따라서 본 조례의 제2장에는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하였고, 제3장에는 「충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하였음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분쟁당사자, 주택관리전문가, 시장이 임명하는 관계공무원, 해당지역 시의원을 분쟁조정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여 체계적인 분쟁조정이 되도록 하였으며 조정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 향후 우리지역 공동주택에서 발생될 여러 가지 분쟁에 대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 조례안 제2조에서 적용할 하수도사업의 범위는 공공하수도사업과 그에 관련되는 종말처리장, 유사한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지급보증에 의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모든 조항은 지방공기업법의 위임에 근거를 두고 있음

- 하수도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에 의거 독립경영을 하기위해서는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등의 세입에 의거 지출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현재 하수도 사용료 부과단가가 하수도 처리원가에 46.5%로써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

충주시 하수도사업은 투명성, 경영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 질의 : 우리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 호라아파트의 분양가격 분쟁 , 럭키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선정과정 분쟁 등이 있음

나.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 질의 :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사항이 아닌지?

○답변 :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 함

6. 심사결과

가.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 원안가결

나.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

수정의결

7. 불 임 :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충주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u>충주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u>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p>제 14 조 (.)</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u>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충주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u> 3.